

#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기 의원)

의안 번호	53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6년 2월 25일

발 의 자 : 김성기 의원

찬 성 자 : 박춘희, 김광성, 심현정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해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비 지급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단체관광 동행, 주말·공휴일 등 해설 시 추가활동비 지급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, 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」

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6. 2. 10. ~ 2026. 2. 23.(14일간), 아래표 참조

조례안(의회안)	검토안(관광정책과)	사유	의회의견
<p>제7조(활동비 지원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	<p>제7조(활동비 지원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책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률 등 사회·경제적 여건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	<p>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」 제2조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 개념이 아닌 ‘자원봉사자’로 정의하고 있음.</p> <p>- 따라서, 운영 조례에 특정경우를 한정하여 추가활동비 지급을 명시하기 보다는 물가상승 등 사회·경제적요인, 인근 시·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활동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</p>	<p>[수정안 반영안함]</p> <p>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3조제1항에서 <b>자원봉사자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</b>을 말하지만</p> <p>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<b>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</b></p> <p>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」 <b>제15조(활동비의 지급)</b>제3항에 따르면,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달리 지급할 수 있다. 라고 되어 있음.</p>

※ 입법례 「인천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」

제14조(활동지원 등)

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2호 중 “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”을 “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문화관광해설사”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,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군의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.</p> <p>제7조(활동비 지원 등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&lt;신 설&gt;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----- -----.</p> <p>제7조(활동비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② <u>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## [관계법령]

### <관광진흥법>

**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,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### <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>

**제15조(활동비의 지급)**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‘월 5일 이상, 또는 연간 60일 이상’으로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 및 수습 기간은 활동 일수에서 제외된다. 다만, 이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,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달리 지급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제7조(활동비 지원 등)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
연락처	033-330-2250